

학칙 시행세칙

제정 1981. 03. 01.
제72차 개정 2020. 09.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은 학칙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제2장 교과이수 및 제1전공 배정

제2조(교과이수) ①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과 구분별 이수학점(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는 교양필수(교양선택과목 중 지역과 협동사회 영역 택1 필수 포함)를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의대는 15학점, 간호학과는 25학점, 물리치료학과는 2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11.26, 2006.11.13, 2010.10.26, 2012.11.16, 2013.3.20, 2014.12.16, 2015.01.27., 2018.10.29., 2019.02.27., 2019.12.02)
 2. 전공교과는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66학점(단일전공 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계열(학부)기초 이수학점은 추가로 필히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및 한의과대학 소속의 전공교과 취득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12.11, 2002.11.26, 2006.11.13., 2013.11.21., 2018.10.29., 2019.12.02)
 3. 일반선택교과(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및 교직과목 포함)는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제1전공 및 복수전공 계열(학부)기초 포함]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 2018.10.29)
 4. 계열(학부)기초 및 전공과목 중 일반선택 불가로 지정된 과목의 경우 일반선택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9)
 5.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자의 교과영역별 이수요건은 공학교육센터 운영규정을 적용 한다. (호 신설 2012.11.16.)
 6. 학과(부)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계열(학부)기초, 전공필수 이수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과정 개편으로 축소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호 신설 2018.10.29.) (개정 2019.12.02)
- ② (삭제) (1996.9.13)
 ③ (삭제) (2002.1.23)
 ④ 교과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7.26., 2018.10.29)

제2조의2(제1전공 배정) ① 학부(군)로 입학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속 학부(군) 내의 전공(학과)을 제1전공으로 선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군)별로 제1전공 신청(선택)기간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 2005.12.12)

- ② 전공(학과)별 인원 배정은 (별표1)에 명시된 전공별 기준인원의 1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11, 2002.1.23, 2002.11.26, 2003.11.21, 2017.07.27)

- ③ 소속 학부(군) 내에서 희망 순으로 선택한 전공(학과)을 성적순에 의거 배정한다.
- ④ 제1전공 변경은 3학년말에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단, 1학년말에 제1전공 신청하는 학부(군)는 2학년말에 1회에 한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08.9.1.) (개정 2016.09.22)
- ⑤ 제1전공 배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제1전공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02.1.23., 2004.7.26)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3조(학기별 등록) ① 학칙 제21조의 학기별 등록은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함으로써 재학생이 된다. (개정 2018.10.29.)

② 재수로 인하여 등록하는 사람의 등록금은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004.7.26.)

제4조(등록금 반환) 학칙 제51조에 의하여 등록금 반환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학생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의하거나 등록 후 발생한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5조(부분수강과 등록금 납부) ① 8회의 등록을 마치고 4년간 수학했으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보류된 자(졸업논문 미제출자 포함)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도 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하고자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 다음 학기 등록시 수강학점이 3학점이하 일 때에는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일 때에는 수업료의 3분의 1, 7-9학점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1을 납부하여야 하며, 10학점이상일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3., 2017.07.27., 2019.02.27.)

② 부분수강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한 후 학사운영팀에서 확인한 부분 수강학점에 따라 회계팀에서 고지한 등록금을 학적정보에서 출력하여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9.02.27.)

제6조(재학기간 경과) 재학년한이 경과한 사람은 등록할 수 없으며 제적된다.

제7조(수강신청) ① 재학생은 직전학기의 소정 기일 내에 다음 학기 수강 할 교과목을 결정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8.10.29.)

② 복학생은 복학신청 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개강 후 복학생에 대한 별도의 수강신청변경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 2018.10.29.)

③ 삭제 (1999.8.9.)

④ 모든 과목은 해당학과, 학년, 학기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수강 과목과 저학년 미수강 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수강신청 전산입력 시 개인정보(ID,비밀번호)는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5.4.)

⑥ **한의과대학의 수업년한(12학기)을 초과하여 재학함으로써 1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0.09.25.)

제8조(수강신청 과목) ① 수강신청과목 순위는 계열(학부)기초, 교양, 전공, 복수전공, 응

합전공, 부전공, 교직, 일반선택 순으로 신청한다. (개정 2000.12.11., 2002.11.26., 2018.10.29.)

② 주야간 교차 수강신청은 불허한다. 단, 일반선택, 재수강,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과목, 총장이 지정한 교양과목, 한의과대학(교양과목 중 e-러닝 강좌 및 사이버토익은 제외) 및 평생교육융합대학 소속 학과는 주야간 교차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02.11.26, 2010.10.26., 2011.1.11., 2018.10.29., 2019.12.02)

③ 계열(학부)기초 및 전공과목 중 일반선택 불가로 지정된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9)

④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00.12.11.)

⑤ 저학년은 상위학년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일반선택,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강 신청한 경우와 폐과된 학과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9.)

제9조(수강신청의 효력)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일단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지 않고 수강도 하지 않는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실점수 0점)가 된다.

제10조(수강신청 과목의 변경 및 정정)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은 해당 학년도 학기의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내에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6.)

가. 삭제 (1999.2.1)

나. 삭제 (1999.2.1)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강 과목을 일절 변경할 수 없다. 단, 강의시간 변경이나 폐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생의 기재사항 오류 및 수강신청 확인원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수강신청 과목의 취소) ① 이미 승인을 받은 수강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7.26., 2018.10.29.)

② (삭제 2018.10.29.)

③ 수강신청과목의 취소는 2과목 이내로 하며, 취소후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일 때 허용한다. 단, 4학년의 수강과목 취소 후 잔여학점은 제11조(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2019.02.27.)

④ 수강신청 과목 취소 시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0.5.4.)

제11조(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① 학칙 제31조에 의하여 취득(신청)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03.03., 2018.10.29.)(제목개정 2018.10.29.)

1. 수강신청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19학점(한의과대학은 24학점, 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는 21학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성교육 관련 과목 및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학과목에 대한 학점은 별도 신청(취득) 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8.10.29.) (개정 2019.08.09.)

2. 4학년은 12학점(최종학기 9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학기별 3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학점 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학생은 미달된 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9.)

3. 17학점 미달 신청(취득)학생은 성적 장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4학년의 경우에는 12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8.10.29.)
 4. e-러닝 강의(사이버토익 과목 포함)로 신청(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3학점 이내[계열(학부)기초 및 전공과목 제외]로 하되, 약간학과 및 평생교육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정규학기 수강신청(취득) 시 학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0.29.) (개정 2019.12.02)
 5.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21학점(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 24학점)까지 신청(취득)할 수 있다. 단, 한의과대학은 제외한다. (신설 2018.10.29.)
 6.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취득)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 교양, 전공, 계열(학부)기초 과목의 순으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점이 낮은 교과목을 우선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0.29.)
- ② (개정 2005.5.31, 2005.12.12, 2010.10.26, 2013.3.20. 2014.12.16. 2016.03.03. 2016.11.21.) 삭제(2018.10.29.)
- ③ (항 신설 2005.12.12) (개정 2010.10.26. 2016.03.03.) 삭제(2018.10.29.)
- ④ (개정 2014.11.14.) 삭제(2018.10.29.)
- ⑤ (개정 2011.1.11.) 삭제(2018.10.29.)
- ⑥ (개정 2000.12.11., 2002.11.26) 삭제(2018.10.29.)
- ⑦ (항신설 2011.1.11.) (개정 2018.02.12.) 삭제(2018.10.29.)
- ⑧ 학칙 제31조의 8에 의한 군휴학 학생 취득(신청)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고 최대 12학점 범위 내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29.)
- ⑨ 학칙 제32조에 의한 계절학기 취득(신청)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29.)

제12조(중복이수) 삭제 (2000.3.1)

- 제13조(재수강)** ① 과목의 성적을 C+이하로 취득한 사람은 그 과목을 재수강[동일과목(교과목명, 학점 및 과목코드가 동일)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할 수 있으며, 주야간 교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재수강으로 취득한 과목의 이수구분은 종전 이수구분을 적용하고 학점은 현재 학점을 적용한다. (개정 2002.11.26., 2019.12.02)
- ②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과 기준 취득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최종 성적으로 인정한다. 단,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등급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02)
- ③ 삭제 (1999.2.25)
- ④ "Non-Pass"의 경우 재수강하여 "Pass"로 취득할 수 있다. (항 신설 2005.5.31.) (개정 2019.12.02)
- ⑤ 동일과목 재수강은 2회로 제한한다. (단, 취득 성적이 F인 교과목은 재수강 회수 제한 없음) (항 신설 2016.03.03)
- ⑥ 재수강으로 성적 향상되어도 재수강 신청 이전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함. (항 신설 2016.03.03.)
- ⑦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지정된 대체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제1항에 의한 재수강 포함) 재수강할 수 없다. (항 신설 2019.12.02)

제14조(교과목 폐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좌는 폐강한다.

1. 교양과목은 다음의 수강정원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폐강을 결정한다. 단, 교양과목 중 제2외국어 과목은 약간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9.12.02)
 - 가. 수강정원 40명 이상 강좌의 수강인원이 주간 20명, 약간 10명 미만인 경우

- 나. 수강정원 26명 이상 40명 미만 강좌의 수강인원이 주간 50%, 야간 30% 미만인 경우 (개정 2019.12.02)
- 다. 수강정원 25명 이하 강좌의 수강인원이 주간 10명, 야간 7명 미만인 경우
- 2. 전공과목으로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단, 해당전공(학과)의 학년별 재학생의 20% 이상 수강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2.12)
(항 개정 2000.12.11)
- ② 삭제 (2000.12.11)
 - ③ 교직과목은 폐강에서 제외한다. 단, 교직이수 예정 학생이 없는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신설 2000.12.11.) (개정 2018.10.29.)
 - ④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폐강강좌에 수강 신청한 학생은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소정 기간에 대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2018.10.29)
 - ⑤ 제1항에 적용되는 폐강 강좌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8.10.29.)

제4장 시험과 성적

- 제15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수시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수업기간 중 4분의3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하여 그 시험성적을 인정한다.
- ③ 담당교수는 수시시험으로 중간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21)

- 제16조(추가시험)** ① 소정기간 수강을 하고도 각종 부득이한 사유(본인의 질병, 직계상고, 학교의무 및 병역의무 등)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교과목 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이전에 담당교수를 거쳐 소정서식에 의거 시험 불응원(증빙서류 첨부)을 해당 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시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교수가 학장 허가를 받아 수시 시험, 출석 및 과제물성적과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성적을 종합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9.06.25)
- ②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말시험이 끝난 후 1주 이내에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개정 2001.6.21, 2007.7.30)
- ③ 추가시험 응시자로서 수업기간 중 4분의3이상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험성적을 인정 하지 않는다.
- ④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B⁺이하로 평가한다.

- 제16조의2(재시험)** ① 한의과대학에 한하여, 계열기초 또는 전공과목 점수가 64점 이하 일 때에는 그 교과목에 한하여 담당교수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시험 실시는 학기말 1회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재시험 과목의 최종성적은 69점 이하로 평가한다.
- ④ 제1항의 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해당 학기 취득성적으로 인정한다. (조 신설 2020.09.25.)

- 제17조(시험시간표)** 정기시험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감독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연구처장은 다른 교수를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7.)

- 제19조(출석)** ① 교원은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9.)
- ②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해당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F 또는 NP로 처리한다. 단, 특별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30. 2016.03.03. 2016.11.21., 2017.07.27., 2018.10.29)
- ③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하고, 과목당 결석일수가 2주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결석사유를 확인하여 출석을 권고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과목 출석부의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에 휴학한 사람은 휴학 허가일까지 총 출석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개정 2002.11.26. 2016.03.03., 2019.12.02)
- ④ 학생의 출석사항은 4주를 기준으로 5주차에 학사운영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평가가 종료된 출석부(상담일지 포함)는 성적평가표와 함께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출석부는 학장 책임 하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2016.03.03., 2017.05.02., 2019.02.27., 2019.06.25)
- ⑤ 단과대학장은 각 강좌 담당교수로 하여금 출석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출석부(상담일지 포함) 제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16.03.03., 2019.12.02)
- ⑥ 공식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교원은 수업시작 정시에 해당 강의실에 재실하여 출결체크를 직접 시행해야 한다. (항 신설 2016.03.03)

제20조(성적평가표 제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 평가 등급표 및 성적평가표를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은 성적평가 등급 비율(동 제20조의 2 ②항 참조) 및 학생의 출석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7.)

제20조의2(성적평가) ① 각 과목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및 과제물 성적을 종합 평가 한다.

② 성적평가 등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30, 2012.3.14, 2013.3.20., 2013.7.31., 2017.12.05., 2020.05.04)

1. (호 신설 2013.7.31) 삭제 (2013.11.21)
2. (호 신설 2013.7.31) 삭제 (2013.11.21)
3. (호 신설 2013.7.31) 삭제 (2013.11.21.)

구분	성적평가 등급비율
교양과목	A등급 : 30%이내 B등급 : A등급과 합산하여 60% 이내
교직과목(교직이수자에 한함)	A등급 : 30%이내 B등급이하 : 교수재량평가
전공과목(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 실기과목 포함)	A등급 : 30%이내 B등급 : A등급과 합산하여 70% 이내
4학년 전공과목	A등급 : 40%이내 B등급이하 : 교수재량평가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 실험·실습, 실기과목[실험·실습, 실기비중 70%(10주)이상]	교수재량평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실험·실습, 실기과목	
인성교육, 취업과 진로지도 등 N,P 교과목	N, P로 표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음

4. (호 신설 2013.7.31) 삭제(2013.11.21.)

③ 등급별인원은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항 신설 2013.7.31.)

제20조의3(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 ① 한의과대학에 한하여 유급 및 졸업대상자의 성적에 관한 사항은 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에서 사정한다.

② 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는 유급 대상자의 수강과목 성적산출 결과, 졸업대상자의 졸업종합시험(지필고사, 실기시험) 성적산출 결과를 검토하여 유급의 적부 여부, 졸업에 필요한 기준성적의 통과 여부를 심의한다.

③ 한의과대학 성적사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의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부속한방병원 교육부장 등 당연직을 포함하여 6인으로 하며, 한의학과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정시기는 학기말 성적입력기간부터 최종성적 정정기간 까지로 하며,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성적사정위원회의 성적사정이 종료된 후 위원장은 유급대상자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한다. (조 신설 2020.09.25.)

제21조(평점평균 및 석차의 산출)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합계를 총 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② 매학기 평점평균에 대한 평점평균 누계산출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합계를 총 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F등급의 교과목 중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취득 전 F등급 교과목의 학점을 총 신청 학점 수에서 제외시켜 평점평균 누계를 산출한다.

③ 졸업 후 총 평점평균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합계를 취득 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994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

④ 매 학기 성적에 대한 석차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평균점수(이수한 교과목의 실점수에 이수학점을 곱한 점수의 합계를 총 신청 학점수로 나눈 점수)가 높은 사람
2. 총점합계(이수한 교과목의 실점수에 이수학점을 곱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3. 평점 평균이 높은 사람
4. 평점 합계가 많은 사람
5. 해당학기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 (호 신설 2005.5.31)
6. 해당학기 전공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호 신설 2005.5.31)
7. 해당학기 전공 총점합계가 많은 사람 (호 신설 2005.5.31)
8. 해당학기 교양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 (호 신설 2005.5.31)
9. 총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호 신설 2005.5.31)
10.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소한 사람 (호 신설 2005.5.31)

제2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무기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당해 학기성적
2.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학기성적 또는 당해 과목 성적
3. 수강신청서 미제출자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학점
5. 출석 미달된 과목의 성적
6.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의 성적
7. 수업일수 4분의3선 후에 입영휴학한 사람 중 성적불인정원서 제출자의 성적(개정 2002.11.26)
8.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제23조(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통지표 발송 후 10 일이내의 성적이의신청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성적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후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개정 2005.8.30. 2016.03.03.)

② 성적정원은 성적관리 과정에서 누락 또는 입력 착오에 한하여(수강신청 임의변경이나 수강 신청 오류로 인한 정정은 인정하지 않음), 이의신청 인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정정원과 구체 증빙자료(경위서, 출석부, 시험답안지 사본, 기타 객관성 입증자료 등), 성적등급비율을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경유,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대학장은 성적정정원과 첨부 증빙자료, 성적등급비율을 검토 확인 후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3., 2019.02.27.)

③ 학사운영팀은 성적정정원과 첨부 증빙자료, 성적등급비율의 타당성을 검토 및 확인 후 정정성적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개정 2005.12.12. 2016.03.03., 2019.02.27.)

제24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인정일 전에 일반휴학 및 입영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개정 2002.1.23.)

② 수업일수 4분의3선 후에 휴학한 사람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성적평가는 중간(수시) 시험성적, 출석 및 과제물 성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1.26.)

③ 수업일수 4분의3선 후에 휴학한 사람은 전항에 의거 성적을 인정받으며 성적을 불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팀에 성적불인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적불인정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6., 2019.02.27.)

④ 전2항의 해당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사람은 학칙 제42조에 의거 학사경고를 한다.

⑤ 휴학한 사람이 복학 해당학기의 직전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재수 복학하여 등록을 필한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삭제·처리하고, 재이수한 학년도 학기 및 성적을 인정한다.

제25조(성적열람) ① 성적열람은 개별적으로 발송된 성적통지표로 갈음한다.

② 전반적인 학점취득 상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성적증명서를 신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학점포기) ① 4학년 재학생은 기 취득학점 중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수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과목수와 학점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학점포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1/2선 이내 소정기간에 허가한다. 다만, 최종학기 성적은 졸업 4주전까지 제출한다.

③ 학점포기하여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④ 학점포기가 허가된 과목은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⑤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 기준의 변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졸업수상자 결정에서 제외되나, 6학점이내(F학점 포함) 포기 학생은 졸업수상 학생에 포함한다. (개정 2005.5.31., 2018.10.29.)

⑥ 학점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7.26., 2018.10.29.)

제26조(성적분류에 의한 평점환산) 성적의 분류에 의한 평점의 환산은 (별표2)의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7.07.27.)

제5장 편입학자,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제27조(학사 및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제목 개정 2018.10.29.)

1. 일반 편입학자

2학년 1학기 편입학자(2학기 이수) : 삭제 (1999.8.9)

2학년 2학기 편입학자(3학기 이수) : 삭제 (1999.8.9)

4학기 이상 이수자 : 65학점(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는 70학점) 이내 (개정 2005.5.31., 2010.10.26., 2018.02.20)

5학기 이수자 : 삭제 (2010.10.26)

2. 전문대 졸업후 타 대학 1학기 수료자 : 삭제 (2000.3.1)

3. 학사편입학자(4학기 이수) : 65학점(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는 70학점)(개정 2011.1.11., 2018.02.20)

4. 계약학과 : 65학점 (호 신설 2009.11.27)

② 편입학생에 대한 이수구분별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학점 인정 원칙

가. 편입학한 학생의 전공학점 인정은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편입학 해당전공(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심사하되, 유사과목과 동일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2.1.23)

나. 이수구분별 학점인정에 있어 전공 및 계열(학부)기초과목은 해당 전공(학과) 주임교수(학과장)이 인정하며,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은 교육연구처장이 인정한다. (개정 2002.1.23., 2019.02.27)

다. 전적대학의 과목별 학점인정 기준은 본 대학의 교과목 학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한다.

라. 본 대학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의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4학기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10.26)

2. 이수구분별 학점인정 범위

가. 전공학점의 인정범위는 동조①항에 의거 인정받은 이수학기별 학점수에서 교양 및 계열(학부)기초 학점을 제외한 학점으로 한다.

나. 교양학점은 동조①항에 의거 인정받은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본교 해당전공(학과) 교과과정에 개설된 교양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2.1.23)

다. 계열(학부)기초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대학의 교과과정에 개설된 학점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편입학한 전공(학과)에서 이수하도록 지정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지정한 교과목의 학점수만큼 계열(학부)기초 학점인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1.23)

라. 일반선택의 학점인정은 동조①항에 의거 인정받은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한 인정학점수에서 전공, 교양, 계열(학부)기초 인정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 한다.

3. 편입 후 학점취득

가. 편입학생은 인정받은 학기 이후의 해당전공(학과)별 교과과정에 개설된 이수구 분별로 동 세칙 제2조(교과이수)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 이상을 펼히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공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11, 2002.1.23, 2010.10.26)

나. 편입학생은 본 대학에서 인정받은 교과목을 제외하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관계없이 본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다. 군위탁생으로 편입한 사람의 학점인정은 본교 개설 교과목과 관계 없이 2학년 과정까지의 학점(6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인정받은 학기 이후의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에 개설된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6)
4. 학점인정 후 학사운영팀에서는 “편입생의 학점 인정표”를 소속전공(학과)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 수강신청 및 지도 시 참고하도록 하고, 학점 인정을 통보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총장은 정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 2019.02.27)
- ③ 재학 중 학부(군), 전공(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계열(학부)기초 및 전공과목을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11.26)
- ④ 졸업 시 평점평균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만으로 산정한다.
- ⑤ 전적 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적대학 이수학점”이라고 기재하고 평점 평균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⑥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하는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요건은 공학교육센터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항 신설 2012.11.16.)
- ⑦ 특별편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29.)

- 제27조의2(재입학자의 학점인정)** 1.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입학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는 재입학 당시의 학칙에 의한 이수학점으로 한다.
3. 삭제 (개정 2010.5.7)

제6장 휴학, 복학 및 제적

- 제28조(휴학의 종류)** 학칙 제23조에 의한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9.)
1. 일반휴학: 질병, 가정사정, 사고 또는 임신·출산·육아(이하 “육아”라 한다),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개정 2014.1.24., 2018.10.29)
 2. 군입영 휴학: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제29조(일반휴학)** ① 개인사정이나 가정사정 혹은 질병, 육아, 창업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개강 2주 전부터 개강 후 2주 이내에 휴학신청을 할 경우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개강 후 3주부터 10주 이내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휴학 할 수 있다. 단, 총장이 별도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개강 후 6주 이내의 경우에도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 2003.3.1, 2009.7.27, 2010.10.26., 2014.1.24., 2017.12.05., 2018.10.29)
- ② 등록을 마친 후 학기도중에 학생이 질병, 육아,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원에 진단서 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24)
- ③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통산 3회까지 휴학할 수 있다.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여야 하며, 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및 육아휴학에 대하여는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3.3.1., 2014.1.24., 2018.10.29)
- ④ 군입영 대기자가 입대 직전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기를 마칠 수가 없어 부득이 일반

휴학을 한 경우와 군입영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3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1.)

⑤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은 입학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영(소집)통지서 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한 학생은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3.1.)

⑥ 창업 휴학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29.)

⑦ 휴학만료 전까지 복학신청 및 휴학 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심의를 거쳐 가사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02.07.)

제30조(군입영 휴학) ① 군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일전까지 군입영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다.

② 군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일로부터 1주 이내에 귀향증을 첨부하여 군입영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 중 군입영한 경우에는 군입영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

(조 개정 2003.3.1.)

제30조의2(휴학 시 제출서류) 휴학원을 제출 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29.)

1. (삭제) (개정 2011.1.11.)

2. 입영(소집) 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등 군입영 관련서류(군입영휴학 신청 학생에 한함) (개정 2018.10.29.)

3. 진단서(질병·육아휴학 신청자에 한함) (개정 2014.1.24.)

4. 주민등록증(대리 신청자에 한함)

5. (삭제)

6. (삭제) (개정 2009.7.27.)

7. 자녀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 신청 학생에 한함) (호 신설 2014.1.24.) (개정 2018.10.29.)

8.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휴학원(창업휴학 신청 학생에 한함) (신설 2018.10.29.)

(조 신설 2003.3.1.)

제31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3주전부터 개강일 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 2011.1.11., 2018.10.29.)

② 군입영휴학 학생으로서 개강일 이후 전역으로 인하여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8.10.29.)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본인도장

3. 전역일이 기재된 전역증사본, 전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1통 (개정 2009.1.5.)

4. 삭제

5.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전역예정자에 한함) (호 신설 2003.3.1.)

③ 군입영휴학 학생으로서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02.1.23., 2018.10.29.)

- ④ 군입영휴학 중인 학생이 개강 3주 후 7일 이내에 전역예정인 경우, 휴가를 통해 수업참여가 가능하여 복학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복학할 수 있다. 다만, 복학허가 후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복학을 취소한다. (개정 2002.1.23., 2002.11.26., 2018.10.29)
- ⑤ 휴학 중 제29조 제3항의 휴학 회수이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삭제 (2003.3.1)
- (조 개정 2003.3.1)

제32조(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4분의3선 이전에 군입영 휴학한 학생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②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복학하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한다.(1995학년도 제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1.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전 휴학자: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대체
2.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전 휴학자: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대체
3.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전 휴학자: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대체
4. 미등록 휴학기간 내에 휴학한 사람: 전액 대체 (호 신설 2003.3.1)

제33조(제적) ① 학칙 제27조에 의한 제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9.)

1. 자퇴 : 타 대학에 입학한 학생,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 [보호자의 연서와 학부(과)장(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학장의 확인을 필한 자퇴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26., 2005.8.30., 2018.10.29)]
 2. 삭제 (2003.3.12)
 3. 일반제적
 - 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학생
 - 나. 휴학기간 만료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개정 2003.3.1)
 - 다. 타 대학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가진 학생
 - 라.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
 4. 징계제적 : 학칙 위반으로 징계에 의거 제적된 학생
 5. 학사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3회(휴학자 및 재입학자의 경우는 복학 및 재입학시기부터 학사경고 횟수를 재 산정), 통산 4회 받은 학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 (호 신설 2007.10.1)(개정 2016.03.03)
- ②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을 하고 1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과 악질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도 교육연구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02.27.)
- ③ 성적부진(복학 학생 포함)으로 재이수 하여야 할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재수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심사 후 학년진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29.)

제7장 학사경고

제34조(학사경고) 매 학기당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2004.7.26)

제35조(수강학점 제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한의과대학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2.11.16)

제36조(학사경고의 통보)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개강 전 학생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6.03.03.)

제36조의2(학사경고자의 지도) 학사경고자의 지도 관리는 학사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조 신설 2016.03.03.) (개정 2017.05.02)

제36조의3(학사경고자의 조건부등록)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 대상이 되어 교무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된 학생은 지도교수 면담, 그리고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조건부등록 서약서를 제출한 후 조건부등록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3.03.)

제37조(학사제적자의 재입학) 학사제적자의 재입학은 해당 학부(군) 및 전공(학과)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2.27)

제37조의2(재입학자의 학사경고) 재입학자의 재학당시에 받은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단, 이는 동 시행세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학사제적 요건에는 산입 하지 않는다. (개정 2008.8.25)
(조 개정 2003.3.12)

제8장 재수

제38조(재수) ① 수강 신청한 과목 중 일부 또는 전 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재수할 수 있다.

- ② 재이수 과목이 1,2학기에 연강되는 과목은 해당학기에 맞추어 수강해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은 재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허용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와 성적부진(복학자 포함)으로 재이수 하여야 할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재수원서를 작성, 학사운영팀에 제출하며 해당 학년도 학기의 성적은 삭제된다.
(개정 2003.11.21., 2018.02.12., 2019.02.27)

제39조(등록) 재이수자의 등록은 제5조에 준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유급재수강) 삭제 (1996.5.7)

제41조(유급회수) 삭제 (1996.5.7)

제42조(학점무효) 삭제 (1996.5.7)

제43조(등록) 삭제 (1996.5.7)

제44조(졸업) 삭제 (1996.5.7)

제45조(유급의 통보) 삭제 (1996.5.7)

제9장 졸업요건 및 각 학년 수료학점

제46조(등록) ①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재입학생,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예과 학생은 2년(4학기) 이상, 한의학과 학생은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09.25.)

제47조(졸업취득학점) 졸업학점은 130학점(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 140학점, 한의예과 72학점, 한의학과 1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되 교과과정이수 구분에 따라 각기

소요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6., 2013.3.20., 2014.12.16., 2020.09.25.)

- 제47조의2(졸업연기)**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도 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하고자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7.07.27)
 ② (신설 2017.07.27.) 삭제(2019.02.27.)
 ③ 제1항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 졸업연기 신청원을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7.07.27.) (개정 2019.02.27.)

- 제47조의3(조기졸업)** ① 학칙 제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6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서 졸업학점 130학점(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학칙시행세칙 제2조(교과이수)에 규정된 이수구분별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사람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의과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11, 2010.10.26, 2013.3.20. 2014.12.16)
 ② 조기졸업 희망자는 재학기간 중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연구처(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7.)
 ③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이라 기재한다.

제47조의4(외국인유학생 졸업요건) 외국인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필히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47조의5(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2.27.)

제47조의6(한의과대학의 졸업요건) 한의과대학의 졸업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의예과 학생은 4학기 이상, 한의학과 학생은 8학기 이상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2. 한의예과에서 72학점 이상, 한의학과에서 16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예과 과정에서 전학년 평점평균이 2.0 이상이며, 본과 과정에서 전학년 전공과목 평점 평균이 2.0 이상인 학생으로서 졸업종합시험(지필고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따라 각 학기마다 지정된 교양과목(교양선택은 제외), 계열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은 전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09.25.)

제48조(졸업논문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발표, 실험·실습보고, 외국어능력시험, 외부자격증)의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졸업증서와 해당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2.8.19)

- 제49조(졸업학점 미달자)** ① 졸업학점이 미달된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펼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미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② 재학연한은 8년(한의과대학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처리한다.(개정 2009.9.3., 2020.09.25.)

제50조(졸업사정 대상의 제외) 졸업예정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졸업학점 130학점(단, 한의과대학 160학점, 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 140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10.10.26, 2013.3.20. 2014.12.16)
2. 학칙시행세칙 제2조(교과이수)에 명시된 교과 과정의 이수구분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00.12.11)
3.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발표, 실험·실습보고, 외국어능력시험, 외부자격증)

- 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02.8.19)
4. 부전공 및 교직이수 신청자가 해당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졸업연기원을 제출한 사람
 5. 복수전공, 융합전공 신청 학생중 졸업에 필요한 제1전공,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개정 2018.10.29.)
 6.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 (신설 2019.02.27.)

제50조의 2(졸업사정위원회) ① 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정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연구처장, 학생행복처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6.21., 2006.5.22., 2019.02.27)

③ 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1조(각 학년 수료학점) 학칙 제34조에 의한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9.)

1. 전 대학 (개정 2014.12.16., 2018.10.29)

제1학년 수료 : 33학점 이상 (개정 2010.10.26, 2013.3.20)

제2학년 수료 : 65학점 이상 (개정 2010.10.26, 2013.3.20)

제3학년 수료 : 98학점 이상 (개정 2010.10.26, 2013.3.20)

제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개정 2010.10.26, 2013.3.20)

2. 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 (호 신설 2013.3.20)(개정 2014.12.16)

제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제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제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제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3.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한의예과 제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한의예과 제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한의학과 제1학년 수료 : 38학점 이상

한의학과 제2학년 수료 : 76학점 이상

한의학과 제3학년 수료 : 114학점 이상

한의학과 제4학년 수료 : 160학점 이상 (신설 2018.10.29.)(개정 2020.09.25.)

제10장 증명서 발급

제52조(제증명서 발급) ① 학력사항을 증명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발급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한 사람
2.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로서 4학년 2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2학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02.1.23, 2010.10.26)
3.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사람
4. 재적증명서: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수료증명서: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을 취득한 사람
6. 휴학증명서: 현재 휴학하고 있는 사람
7.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02.1.23)
8. 성적증명서: 매 학기 수강신청 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표

9. 교직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로서 교직을 이수하는 사람 (호 신설 2002.1.23)
10. 학적부사본: 인적사항, 학적사항, 기타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학적부 사본(호 신설 2002.1.23)
11. 교육비납입증명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한 사람 (호 신설 2002.1.23.)
12. 제적증명서 : 제적된 사람 (호 신설 2020.02.07.)
13. **장학금(수혜, 미수혜)증명서** :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는 사람(호 신설 2020.09.25.)
② 제증명서는 방문신청, 자동발급기, FAX 민원, 인터넷, 민원우편 등에 의하여 발급한다. (항 개정 2003.3.1., 2020.02.07.)

제11장 학번

제53조(학번의 구성) 학번은 학생의 고유번호로서 입학년도 4단위, 학부(군,과)2단위와 순번3단위로 구성한다.

제54조(학번의 순번) 학번의 순번은 학과 단위별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일렬번호를 부여한다.

제55조(학번의 변경) 학번은 졸업 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제56조(편입생 및 재입학생 학번) ① 편입생에게 학번을 부여함에 있어 입학년도 숫자는 편입학과 학년 재학생의 입학년도로 부여한다.
② 재입학 학생의 학번은 당초 입학 때 부여받은 학번을 부여한다.
(조 개정 2004.2.27)

제12장 학적부

제57조(학적부 작성) ① 학적부는 신입생 및 편입생의 입학원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② 입학원서를 근거로 인적 및 학적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며, 졸업시점에 모든 학적사항 및 성적이 기록된 학적부를 전산 출력하여 담당자가 확인 날인 후 교육연구처장이 검인한다. (1997학년도 1학년 재학생부터 적용) (개정 2019.02.27.)

③ 편입생의 학적부 작성은 동조 제②항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이수 구분별로 학점수만 기재한다.

제58조(학적부 기재사항) 학적부에는 다음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1997학년도 1학년 재학생부터 적용)

1. 인적사항

- 가. 소속대학, 학과, 학번
- 나. 주소
- 다. 성명
- 라. 성별
- 마. 삭 제
- 바. 전화번호
- 사. 주민등록번호
- 아. 보호자(성명, 관계, 현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2005.8.30)
- 자. 출신학교(고등학교, 전적대학)

2. 학적사항

- 가. 입학(신입, 편입)
 - 나. 졸업사항(졸업연월일(제 회), 졸업증서 및 학위번호)
 - 다. 수료사항
 - 라. 등록사항
 - 마. 학적변동 사항(휴학, 복학, 제적 및 재입학)
 - 바. 학사경고 및 유급사항
 - 사. 관보사항(페이지, 일련번호)
 - 아. 삭제 (2001.6.21)
 - 자. 삭제
 - 차. 교직이수 여부
3. 상별사항
- 가. 장학금 수혜사항
 - 나. 포상
 - 다. 징계사항
4. 학적부 정정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9조 삭제 (2002.1.23)**제60조** 삭제 (2002.1.23)

제61조(학적부 정정) ① 본 대학교에 학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적부와 호적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운영팀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부에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9.02.27)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명(호적초본 첨부)
2. 삭제 (2002.1.23)
3.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초본 첨부)

제62조(학적부 보관 및 보존) ① 학적부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연도별, 학과별, 졸업증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제적생의 경우에는 제적년도 학기별, 학과별로 구분하여 담당자가 확인 날인 후 교육연구처장이 검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2.1.23., 2019.02.27)

② 학적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학적부는 필요에 따라 원본 외에 마이크로필름 또는 CD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

제13장 전과

제63조(전과) ① 전과는 학부(군)별 입학정원 또는 전공(학과)별 기준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2, 3학년 초에 허가한다. 다만, 한의과대학, 평생교육융합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유아교육학과로의 전과와 편입학자의 전과는 불허한다. 단, 평생교육융합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내 소속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하다. (개정 2000.2.14, 2003.11.21, 2005.5.31, 2006.9.25. 2014.07.28., 2018.02.20. 2018.05.03., 2018.10.29., 2019.12.02)

- ②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동 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2019.12.02)
- ③ 특정학부(군) 및 전공(학과)에 전출, 전입 희망자가 많아 학부(군) 및 전공(학과)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학부(군)장 및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동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 ④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학점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⑤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폐지 등의 특별한 사유로 전과를 시행하는 경우 총장이 전과시행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05.12.12.)(개정 2018.02.20.)
- ⑥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과의 시기와 학점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한다.(항 신설 2020.08.31.)

제64조(시기) ① 전과는 해당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허가한다. 단, 9월 입학 외국인 학생의 해당 학년 초는 2학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7.4)

②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단,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11.21., 2020.09.18.)

제65조(원서제출)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출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학부(군)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소정기간 내에 전과원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제66조(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소속전공(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제67조(장학금 지급중지) 전과를 허락한 학기에는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제63조 제5항에 의거 전과를 허가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2018.02.20.)

부칙

이 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평점평균 및 석차의 산출) 제3항에 한하여는 1994학년도 졸업생부터, 제32조(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제2항에 한하여는 1995학년도 제1학기 휴학자부터, 제38조(유급대상) · 제57조(학적부작성) 제2항 및 제58조(학적부 기재사항)에 한하여는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제8조(수강신청과목순서)·제11조(수강신청 한도학점) 및 제34조(학사경고)에 한하여는 199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 ③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6년 5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6년 8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9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가. 제2조(교과이수)는 1998학년도 이후 1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하며, 1997학년도 이전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제33조(제적) ①항의 2는 1999-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하며, 적용 전 이미 2, 3회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4회를 적용한다.
 다. 제27조 제①항의 1호, ②항 1호의 다.라, 3호의 다는 1998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2조의 2는 1999학년도 1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제37조의 2는 1999-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며, 적용 전 이미 2, 3회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통산 4회를 적용한다.
- ④ 제49조는 1999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⑤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제53조(학번의 구성)의 입학년도 4단위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과목 이수구분의 필수 폐지 및 교과목 폐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교과이수), 제8조(수강신청 과목), 제11조(수강신청 한도 학점), 제14조(교과목 폐강), 제27조(학사 및 일반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제50조(졸업사정대상의 제외)는 2001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 ③ 이 세칙의 시행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1년 6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25조의2(학점포기)는 2002학년도 4학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2. 이 세칙의 시행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제2호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2학년도 이전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81401-955, 2003.11.21)

이 세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1, 2004.2.27)

이 세칙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55, 2004.7.23)

이 세칙은 2004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87, 2005.5.31)

- ① (시행적용일) 이 세칙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 제25조의 2, 제27조의 적용시점) 제21조(평점평균 및 석차의 산출)는 학사 81200-1015(2004.06.30)호, 제25조의2(학점포기)는 학사 81210-1154(2003.04.08.)호에 의하여 적용 시행하고, 제27조(학사 및 일반 편입학자의 학점인정)는 2005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15, 2005.8.30)

이 세칙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65, 2005.12.12)

이 세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02, 2006.5.22)

이 세칙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84, 2006.9.25)

이 세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63, 2006.11.1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교과이수) 1호내지 2호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33, 2007.7.30)

이 세칙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26, 2007.10.2)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동 시행세칙 개정 당시 이미 받은 학사경고 횟수는 학사제적 요건에 산입 한다. 다만 연속 3회, 통산 4회 학사경고를 이미 받은 학생의 경우 제적처분을 유예 하되 동 시행세칙이 개정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33조 제1항의 제5호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23, 2008.8.26)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동 시행세칙 제33조 제1항 제5호 학사제적 요건은 2007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 횟수부터 산입하여 처리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65, 2008.9.8)

이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 2009.1.5)

이 세칙은 2009년 01월 0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67, 2009.7.27)

이 세칙은 2009년 07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87, 2009.9.3)

이 세칙은 2009년 09월 0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392, 2009.11.27)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27조 1항의 4호는 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08, 2010.5.7)

이 세칙은 2010년 05월 0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14, 2010.10.28)

- ① (시행일)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130학점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130학점 적용은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0, 2011.1.12)

- ① (시행일)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1조, 제27조는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등의 학적변동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제47조의 4는 2011학년도 외국인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2, 2012.3.14)

이 세칙은 201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28, 2012.7.4.)

(시행일)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44, 2012.11.16)

(시행일)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7, 2013.3.20)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간호학과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간호학과 졸업이수 학점은 2013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는 해당 학생의 입학기준 년도의 졸업 이수 학점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36, 2013.7.31)

이 세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24, 2013.11.2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2조(교과이수)2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제20조의2(성적평가)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성적평가 등급비율
교양 · 전공과목(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 실기과목 포함),	A등급 : 20%

구 분	성적평가 등급비율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전공과목, 4학년 전공과목	B등급 : A등급과 합산하여 60%이내
한의대 이론 전공과목	A등급 : 20%이내 B등급 : A등급과 합산하여 60%이내
한의대의 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 전공과목	A등급 : 30%이내 B등급 : A등급과 합산하여 70%이내
교직과목(교직이수자에 한함)	A등급 : 20%이내
이론이 포함되지 않은 실험·실습, 실기과목, 외부기관이 위탁하는 학생의 이수과목, 계약학과	A등급 : 20%이내 B등급 : A등급과 합산하여 60%이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실험·실습, 실기과목	교수재량(외부평가)
인성교육, 취업과 진로지도 등 N,P 교과목	N, P로 표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 - 한의학과 임상실습(I), 임상실습(II) - SLP 과목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 교수재량 평가 - 2013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교수재량 평가

부칙 (기획예산부-70, 2014.1.24)

이 세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19, 2014. 07.28)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3조(전과) 1항의 체육학부 학부 내 전과 폐지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96, 2014.11.14)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1조(수강신청 한도학점) 제4항의 성적장학금 지급기준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9, 2014.12.16)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상병리학과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임상병리학과 졸업이수학점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는 해당 학생의 입학기준 년도의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4, 2015.01.27)

이 세칙은 2015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49, 2016.03.03)

이 세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14, 2016.09.22)

이 세칙은 2016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08, 2016.11.18)

이 세칙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1, 2017.05.12)

이 세칙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15, 2017.07.27)

이 세칙은 2017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2, 2017.12.05)

이 세칙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8, 2018.02.12)

이 세칙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4, 2018.02.20)

이 세칙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46, 2018.05.0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예술체육대학으로의 전과는 2019학년도 제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47, 2018.10.29.)

이 세칙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23, 2019.02.2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교과이수) 제1항 제1호의 개정 세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세칙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09, 2019.08.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조(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1항 제1호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87, 2019.12.02.)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교과이수)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또한 제13조(재수강) 제2항 및 제7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전체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83, 2020.02.07.)

이 세칙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10, 2020.05.04.)

이 세칙은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48, 2020.08.27.)

이 세칙은 2020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05, 2020.09.1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4조(시기) 제2항 단서는 2020학년도 2학기 전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30, 2020.09.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이전 사항은 종전의 한의과대학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이 세칙의 시행에 따라 한의과대학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별표 1) (개정 2017.07.27) (종전 별표1은 별표2로 이동 2017.07.27)

전공별 기준인원

모집단위	입학 학년도			
	2018	2017	2016	2015
영미어문학부			55	55
	영어영문학전공		30	30
	영어교수법전공		25	25
행정학부			60	60
	행정학전공		30	30
	전자정부학전공		30	30
언론광고학부	60	60	60	60
	언론영상전공	30	30	30
	광고홍보전공	30	30	30
친환경식물학부	50	50	50	50
	유기농생태학전공	25	25	25
	원예조경전공	25	25	25
동물생명자원학부			70	70
	동물자원학전공		35	35
	동물생명공학전공		35	35
생명공학부	55	55		
	생명과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100	100
	정보통신공학전공		50	50
	컴퓨터공학전공		50	50
FTA국제학부	60	60		
	국제경영전공			
	국제금융전공			
	국제물류전공			

(별표 2) (신설 2017.07.27.) (종전 별표1에서 이동 2017.07.27)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

등급	실점수	평점	환산점수	등급	실점수	평점	환산점수
A^+	95–100	4.5	100.0	C^+	75–79	2.7	79.5
		4.45	99.5			2.6	78.5
		4.4	98.5			2.5	77.5
		4.35	97.5			2.4	76.5
		4.3	96.5			2.3	75.5
		4.25	95.5				
A	90–94	4.2	94.5	C	70–74	2.2	74.5
		4.1	93.5			2.1	73.5
		4.0	92.5			2.0	72.5
		3.9	91.5			1.9	71.5
		3.8	90.5			1.8	70.5
B^+	85–89	3.7	89.5	D^+	65–69	1.7	69.5
		3.6	88.5			1.6	68.5
		3.5	87.5			1.5	67.5
		3.4	86.5			1.4	66.5
		3.3	85.5			1.3	65.5
B	80–84	3.2	84.5	D	60–64	1.2	64.5
		3.1	83.5			1.1	63.5
		3.0	82.5			1.0	62.5
		2.9	81.5			0.9	61.5
		2.8	80.5			0.8	60.5
				F	0–59	0	0

★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

예: 평점 4.15 → 환산점수 94.0

평점 2.85 → 환산점수 81.0